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
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됨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
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도 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 제목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을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의제 행정기관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과 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비고

1.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도에 대해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통보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별표 7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과 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비고

1.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통보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시·도 자치경찰위원회)</u> <u>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2